

## 산림청 공고 제2023 - 102호

「산림보호법」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「산불특별대책기간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6일  
산 립 청 장

### 2023년 「산불특별대책기간」 설정·운영

#### 1.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

가. 기간 : 2023. 3. 6.(월) ~ 4. 30.(일) / 56일간

나. 사유 : 최근 10년('13~'22년)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%인 15건이 3~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,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

#### 2. 산불 신고 요령

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고 요령 :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, 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)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

#### 나. 신고할 행정기관

1) 시청·군청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
○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청) : 042-481-4119

2)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

3)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
※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'스마트산림재해앱'을 통해서도 가능

### 3. 당부사항

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첫째,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·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산림보호법」 시행령 개정('22.11.15.)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

둘째,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(www.forest.go.kr) 또는 인터넷 포털(네이버)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셋째,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,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넷째,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섯째,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.

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.

※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: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아울러,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.